

2004년 10월 9일 (조간, **석간**)부터 사용해 주십시오



- ▶ 2004. 10. 배포
- ▶ 총 2 쪽 (사진없음)

## 보 도 자 료

- ▶ 산재보험과 주평식사무관  
T E L : 2110-7125~6  
E-MAIL : jw1209@molab.go.kr  
FAX : 507-3734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# 달라지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제도

- 보험료 신고·납부기간 연장
- 5인미만 사업장 징수특례제도 도입
- 여객·화물운송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

- 앞으로는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·소멸,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일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

※ 2003.12.31 「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」 제정되었고, 2004.10.19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05년부터 시행

- 보험료 신고·납부시기가 사업장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「연도초일부터 70일이내(3.10 또는 3.11)」 → 「3월말까지」로 연장된다.
-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납부편의와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진신고·납부 대신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(기준임금×근로자수×보험료율)를 부과·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가 도입된다.
- 매년 사업종류별로 결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사업장의 재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해주는 「개별실적요율제도」 운영과 관련하여

- 현재 적용제외 되고 있는 “기타의 사업”에 대해서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의 제고와 재해예방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별 실적요율이 적용된다.

※ 기타의 사업 : 음식·숙박업, 임대 및 사회서비스업, 위생업, 도·소매업 등  
(’04.8월 현재 전체 983천개소중 59%인 581천개소가 기타의 사업)

-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의 부과 방법이 변경(매분기 3.6%→매월 1.2%)된다.
- 3년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,
  -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도 고용·산재보험 모두 300인미만(현재 고용 100인, 산재 300인미만) 사업주로 통일된다.
-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화물지입차주, 개인택시, 개인용달 운송업자 등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.
  -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·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에 가입(임의가입, 보험료 본인부담)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
  - 중·소기업사업주의 범위에 화물지입차주(18만명), 개인용달운송업자(14만명), 개인택시업자(14만명) 등 여객·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자영업자도 포함된다.